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보도자료		2023. 3. 6.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보관실
담당자	인사담당관 유창우 (02-3480-1571)	02-3480-1451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내정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각 지명 내정**

1. 내정 내용

-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각 지명하기로 내정하였음

2. 내정 경위

-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에 따라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하였음
- 그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 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였음
-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하였음. 이에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다 고 판단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각 지명하기로 내정하였음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좋은 재판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 약 력

1965. 10. 17.생 (57세) 전북 정읍 출생

1984. 2. 동암고 졸업

1988. 2.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7. 10.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9기)

1993. 3.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1997. 2. 대전지법 흥성지원 판사

1999. 3. 대전고법 판사

2000. 8. 미국 컬럼비아대학 파견

2004. 2. 서울고법 판사

2005. 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2. 9.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5. 2.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8.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3. 2. 서울고법 부장판사(現)



1995. 3. 서울지법 판사

1998. 3.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2000. 2.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2001. 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4. 4.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

2006. 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2008. 2.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2012. 2.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2014.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 2.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2021. 2.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 프로필

-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 동안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 하였던 정통 법관으로 충분한 시간의 법정변론을 통해 당사자에게 입증기회를 부여 하고 재판 결과에 납득하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소송당사자의 신뢰를 얻고 있고, 법원 행정처 심의관,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업무도 훌륭히 수행하였음

사법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심의관으로 재직 시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통합 도산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도산분야 관련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수원, 부산의 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함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재직 시에는 연구과제 수요조사 방안으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의 활용, 법원 내·외부 연구수요조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연구보고서의 무료 배포 확대,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의 공동학술대회 등을 통해 사법정책연구원의 홍보와 역할 강화에 기여함

- 주요 판결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사선변호인의 참여 없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이 실시한 구속영장 실질심문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종전 실무는 어차피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므로 사선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실시된 구속영장 심문도 적법하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이 이미 선임되어 있는 사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기 일을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사선변호인 참여 없이 실시한 구속영장 실질심문은 위법하고 그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최초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고, 이후 법원 실무가 변경되고 사선변호인에 대한 통지 절차도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유신헌법 철폐 시위 등에 참가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종전 대법원 판례는 고문, 불법구금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으나, 긴급조치의 발령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등에서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치 9호의 발령,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의 위법행위로서 국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여 새로운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고,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의 법리를 채택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기에 이르렀음(2018다212610 판결).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현황의 공개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의 요구에 응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고,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이를 공개한 행위는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임을 확인함

- 법원행정처의 방대한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 여러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음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의 확대 등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였으며, 영상재판·화상회의, 신규 전자법정 구축 등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온라인 사법서비스 지원 체계를 정비하였음

각종 재판제도 개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다각도의 복지정책 시행, 윤리성 강화 등을 위한 여러 정책 수립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방역대책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법원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원활한 재판기능을 유지하도록 기여하였음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 약 력

1969. 5. 24.생 (53세) 경남 하동 출생

1988. 2. 남성여고 졸업

1993. 2.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993. 10. 제35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5기)



1996. 3.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1998. 3.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2000. 2.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2004. 2. 대전지법 판사

2005. 2. 대전고법 판사

2006. 2. 대전지법 판사

2006. 7. 미국 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

2007. 5. 대전고법 판사

2009. 2. 사법연수원 교수

2011. 2.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4. 2.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2016. 2.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9. 2. 대전고법 판사(現)

○ 프로필

-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계속근무 법관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대전·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법관임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간결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책임감이 강하면서도 특유의 포용력과 배려심으로 리더십과 통솔력이 뛰어나고, 특히 후배 여성 법관들에게 법원생활과 업무자세 등에 대한 조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뛰어난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을 발휘하여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항상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등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법정 질서에 관하여는 단호한 면모를 보여주어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가 두터움

대전지방법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에 선정 됨

- 주요 판결

생후 20개월인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고문에 가까운 폭행·성폭행을 한 다음 방치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과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정을 위로하고, 나아가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함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좋은 재판

의료수술 후 양다리가 완전 마비되는 장애를 입자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수술 중 의사의 과실 증명이 어려운 사안에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환자의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하여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함

군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해달라고 한 사건에서, 군복무 및 병증이 발생한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객관적 기록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병증 발생을 전후한 생활 내용, 발병 무렵부터 원고가 보인 군생활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 행동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함으로써, 군인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외면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함을 분명히 밝힘

-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재판, 현실성 있는 실천적 연구에 힘써

구체적 사건에서 법리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법정에서 적극적인 석명과 충실한 변론을 거쳐 이익형량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능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설득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 분쟁의 평화적·화해적 해결에 힘쓰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엄격한 법리에 매몰되지 않고 폭넓은 시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들을 발굴하고 행정청 등 공적 기관들의 협력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에 기여함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조인 양성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양형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좋은 재판

제도와 문제해결법원의 발전'이라는 논문을 통해 약물남용, 정신건강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적절한 분야에 '문제해결법원' 식 접근방법을 시도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음